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미래발전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2년 12 월 28 일

여 수 시 장 [illegible] 인

여수시 조례 제1811호

붙임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811호

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정책기획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여수시(이하 "시(市)"이라 한다)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
3.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·추진에 관한 사항 등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신속한 정책자문 및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.

1. 시(市)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가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

다. 시정 주요현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

라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(市)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

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자문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,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.

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
2.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
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제9조(비밀유지 등의 의무)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의견청취 및 제출 등)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,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라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.